

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개정 안

현행	개정	비고
<p>제4조 (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)</p> <p>①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·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.<개정:2017.09.06.,2020.09.21.></p> <p>② 안전관리위원장(이하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.</p> <p>1.총장을 보좌하여 본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.</p> <p>2.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, 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.</p> <p>3.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 대책을 수립·시행한다.</p> <p>③ 총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<신설: 2020.02.24. ></p> <p>④ 총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·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<신설: 2020.02.24. ></p>	<p>제4조 (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)</p> <p>①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·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.<개정:2017.09.06.,2020.09.21.></p> <p>② 안전관리위원장(이하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.</p> <p>—1.총장을 보좌하여 본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.</p> <p>—2.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, 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.</p> <p>—3.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 대책을 수립·시행한다.</p> <p>본교 내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·안전관리팀을 주관부서로 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.</p> <p>③ 총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<신설: 2020.02.24. ></p> <p>④ 총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·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<신설: 2020.02.24. ></p>	
<p>제7조 (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)</p> <p>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.</p> <p>2. 담당 연구실 사용에 대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한다.</p> <p>3.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연구주체장에게 보고한다.</p> <p>4.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.</p> <p>5.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:2017.09.06.></p> <p>6.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, 시설물,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</p>	<p>제7조 (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)</p> <p>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. 사항</p> <p>2. 담당 연구실 사용에 대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한다.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3.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연구주체장 총장에게 보고한다.</p> <p>4.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.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5.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</p>	

<p>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(양식)은 [별표 5]와 같다.<신설: 2020.02.24. ></p> <p>7.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<개정:2017.09.06., 2020.02.24.></p>	<p>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:2017.09.06.></p> <p>6.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, 시설물,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(양식)은 [별표 5]와 같다 한다.<신설: 2020.02.24. ></p> <p>7.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<개정:2017.09.06., 2020.02.24.></p>	
<p>제10조 (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)</p> <p>③ 총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<신설: 2020.02.24. ></p>	<p>제10조 (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)</p> <p>③ 총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배정하여야 한다.<신설: 2020.02.24. ></p>	
<p>제11조 (교육·훈련 등)</p> <p>⑤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·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여야한다.</p>	<p>제11조 (교육·훈련 등)</p> <p>⑤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·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한다.</p>	
<p>제16조 (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)<신설: 2020.02.24. ></p> <p>①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수칙을 비치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 연구실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가 할 수 있다.</p> <p>②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은 [별표 6]과 같다.</p>	<p>제16조 (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)<신설: 2020.02.24. ></p> <p>①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수칙을 비치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 연구실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가 할 수 있다.</p> <p>②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은 [별표 6]과5)와 같다.</p>	